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운영 미흡

관계기관 백양중학교

내 용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정정대장 결재 시 4단 결재 오류

「연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자료의 정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학년도에 교장의 휴직과 병가 등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의 권한 대행에 대한 내부결재를 하지 않고 4단 결재(담임-학년부장-교부부장-교감)를 진행하였으며 사후에 교장의 권한 대행에 대한 내부결재를 상신한 사실이 있다.

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심의사항 누락

「연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자료의 정정]에 따르면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1건에 대하여 정정해야 할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의 인적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양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관계기관 백양중학교

내 용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결재 시 위원 서명(병렬협조) 누락

「연도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회의록)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결재 시 병렬협조를 활용하거나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K-에듀과인에서 관리함)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학년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13건에 대하여 병렬협조나 위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자율동아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누락

「연도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의 평가 기준 및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학년도 자율동아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양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백양중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평가 계획 수립 절차 미흡

관계기관 백양중학교

내 용

「연도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평가관리]에 따르면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 2021학년도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교과협의록(전 교과목)과 2020학년도 1차~3차 평가 계획 변경에 따른 교과협의록이 누락 되었으며 2020학년도 1차~3차 평가 계획 변경에 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양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백양중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미흡

관계기관 백양중학교

내 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2020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1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교육청 보고는 하였으나 전담기구 심의 관련 회의록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1건에 대해 교육청에 사안 발생 보고는 하였으나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양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백양중학교

내 용

각급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제한된다.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존치 및 이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따라 감독청에 건축 승인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 재산을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백양중학교장은 가설건축물 존치 및 이용을 위한 감독청의 허가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기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양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백양중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